

'15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공채(남·여) · 101경비단 · 학교전담 · 경찰행정학과특채-

형사소송법

남 부 경 찰 학 원 안태영 해설

1. 2015년 3차 경찰시험 출제범위

출 제 영 역		출 제 내 용	출제 문제수
제1편 서론	형사소송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수사의 기본이론		
	임의수사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긴급체포/체포구속적부심/구속/압수수색/압수물처리/종합/증거보전	7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1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소송의 주체	관할/성명모용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열람등사	1
제4편 공판	공판절차	공소장변경/증인신문/국민참여재판	3
	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15조/탄핵증거	3
	재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약식절차	2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종합		신청·청구권자·참여자등	1

2. 2015년 3차 경찰시험 출제경향분석 및 대책

A. 출제방식

4지선다형 문제로써 옳은 것, 틀린 것 묻는 문제가 14문제이며, 박스형 문제는 6문제이다. 그 중에서 개수문제는 4문제이다.

B. 출제내용

- ㉠ 80개 지문 중 법조문:판례:이론의 비율은 40:39:1 이다.(20번은 4가지문으로 간주함)
- ㉡ 난이도는 중급정도의 문제이며 2차시험과 달리 이번 3차시험은 변별력이 있는 출제이다. 단지 지문이 장문이어서 체감상 어렵게 느껴졌으리라고 본다. 평소에 교과서를 도외시하고 요점위주로 너무 요령만 피운 수험생은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 90점 이하의 수험생은 좋은 점수가 아니다.
- ㉢ 최신판례와 최근개정법령이 출제되었다. 특히 문제 9번, 13번, 14번, 16번은 최근판례와 법령이며 문제풀이와 찍기특강에서 모두 학습한 내용이다.
- ㉣ 기본서 위주의 학습과 조문과 판례의 정확한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다. 대충 결론만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의 판례 전체를 알고 있는가, 개정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출제한 점이 신선하다.(문제9번, 13번, 14번)

C. 수험대책

- ㉠ 출제경향은 자주 바뀐다. 우리 수험생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 ㉡ 판례와 조문을 평소부터 차분하게 학습한다. 최근판례와 개정법령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 평소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며, 기본강의와 문제풀이특강 그리고 마지막 핵심 찍기특강까지 계속 반복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킨다.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 제2조

㉡ 제8조 제2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판결] 즉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가 가능하다. 즉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정답 ②

2.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 ①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제121조)
- ③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제1항)
- ④ 공소장 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해설 ①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권자이다.(제15조) ②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권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다.(제121조) ③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④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8조 제2항)

정답 ④

3.某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사실은某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하였고,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②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

차를 밝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위 ①, ②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 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

해설 ①②③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판결 ④법원으로서의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판결]

정답 ④

4.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다만, 위 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제35조 제1항 ②피해자들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 제1항) ③④증거개시의 문제이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정답 ④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전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②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관련규칙은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제1호) ④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정답 ③

6.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도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를 할 수 없다.(제200조의4 제2항, 제3항) ②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③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3항, 제101조 제1항 ④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정답 ③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

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해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서 해당(제214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지문②의 내용은 피의자보석으로 석방된자에 대한 재구속사유로서 구별을 요함!! ③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④ 제214조의2 제6항)

정답 ②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대법원 2004.3.23, 자, 2003도126, 결정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정답 ②

9.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예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는 않

다.

- ㉠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 구속된 피의자도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는 출석 불응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제포)에 따라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① ㉠(O), ㉡(O), ㉢(O), ㉣(X)
- ② ㉠(O), ㉡(X), ㉢(X), ㉣(O)
- ③ ㉠(X), ㉡(O), ㉢(O), ㉣(O)
- ④ ㉠(X), ㉡(O), ㉢(O), ㉣(X)

해설 ㉠㉡은 지문이고 ㉢㉣은 틀린 지문이다. [대법원 2013.7.1., 자, 2013도160, 결정]

㉠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은 지문

㉢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문제풀이와 찍기특강에서 4지문 모두 학습한 사항이다.

정답 ④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환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①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5994, 판결] ②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2461, 판결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환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9593, 판결] ④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정답 ③

11.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해설 ①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4조 제3항)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소명'은 모두 '~하여야 한다'이다. ② 제184조 제1항 ③ 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판결 ④ 제185조

정답 ①

12.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틀린지문은 ㉡㉢㉤이다.

㉠ 폐기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7.1.9, 자, 96모34, 결정]

정답 ③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③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그러므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참고 ③④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찍기특강에서 모두 학습한 사항이다.

정답 ③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위 ㉠과 같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청인에 대하여까지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
- ㉢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의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틀린 것은 ㉡이다.

㉠제165조의 2 제3호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참고 ㉡㉢지문은 최근판례로서 2지문 모두 찍기특강에서 OX로 확인한 문제이다.

정답 ②

15.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 ④ 일본하관 세관서 통관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 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해설 ①③④는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판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해당여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해당 O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해당 X
-군요원이 작성한 진단서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법원의 판결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구속적부심문조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항해일지, 주민등록등본	-개인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정답 ②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판결 ②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판결 ③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5040, 판결 ④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정답 ④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해설 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8377, 판결] ②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게 아니라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③ 배제결정(동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④ 결격사유(동법률 제17조 제4호)

참고 ①판례는 문제풀이와 찍기특강에서 학습한 내용이다.

정답 ②

1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③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④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정답 ③

19.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① 즉결심판의 대상(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불출석심판(동법 제8조의2 제1항) ④ 즉결심판서(동법 제12조 제1항)

정답 ②

20.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여야 한다.

- 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 ② 무죄판결을 선고
- ③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
- ④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

해설 ①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이조문은 '즉결심판에서 즉결심판으로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구별을 요함!!!

정답 ①